산림청

정부혁신 보다 나은 산림청

그루가 알려주는 임업인을 위한 세금혜택 A to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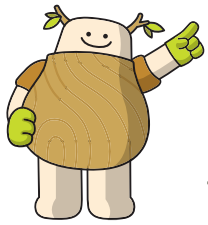

그루가 알려주는

임업인을 위한 세금혜택 AtoZ

산림청

Contents

Reference > 미리 알아두면 좋은 용어정리 3

Chapter 1 >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 6

Chapter 2 > 국세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8

소득세 9

법인세 17

종합부동산세 20

상속세 23

증여세 29

부가가치세 33

Chapter 3 > 지방세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42

취득세 43

재산세 45

Attached 1 > 별지1 47

알아두면 좋은 꿀정보

Attached 2 > 별지2 48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임업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①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④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후계자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① ~ ③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① **55세 미만**이며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산림청이 고시*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000m^2 ~ 10,000m^2)'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연령 무관)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87호)

③ 산림청이 고시*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1,000m^2~10,000m^2)'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임업관련 대학교·고등학교 졸업 시 면제)하고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연령 무관)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87호)

용어정리

독림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구 분		요 건
개인 독림가	모범 독림가	**300ha**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또는 **조림 실적 100ha** 이상이면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우수 독림가	**100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또는 **50ha** 이상 **조림실적**(유실수는 20ha 이상)을 가지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자영 독림가	**5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또는 **유실수 3ha**이상 조림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
법인 독림가		**300ha**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는 법인 또는 **조림실적**이 **100ha**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는 법인
		10ha 이상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고 있거나, 조림실적이 **5ha**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농지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경영하면서 농·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의미합니다. 농지에서의 농업경영정보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하고 임야에서의 **임업경영정보는 지방산림청**에 등록합니다.

영농조합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농업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임야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지마다 설정되는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 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산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해 정의되는 토지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 ·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 · 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 도로 · 구거 · 유지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됩니다.

Tip 과세표준과 누진공제를 활용한 세금 계산법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누진세의 경우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이 됩니다.

Chapter 1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우리의 일상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세금!
매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도
'세알못(세금을 알지 못하는) 당신'이지 않나요?
세알못 탈출을 그루가 도와드립니다!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세금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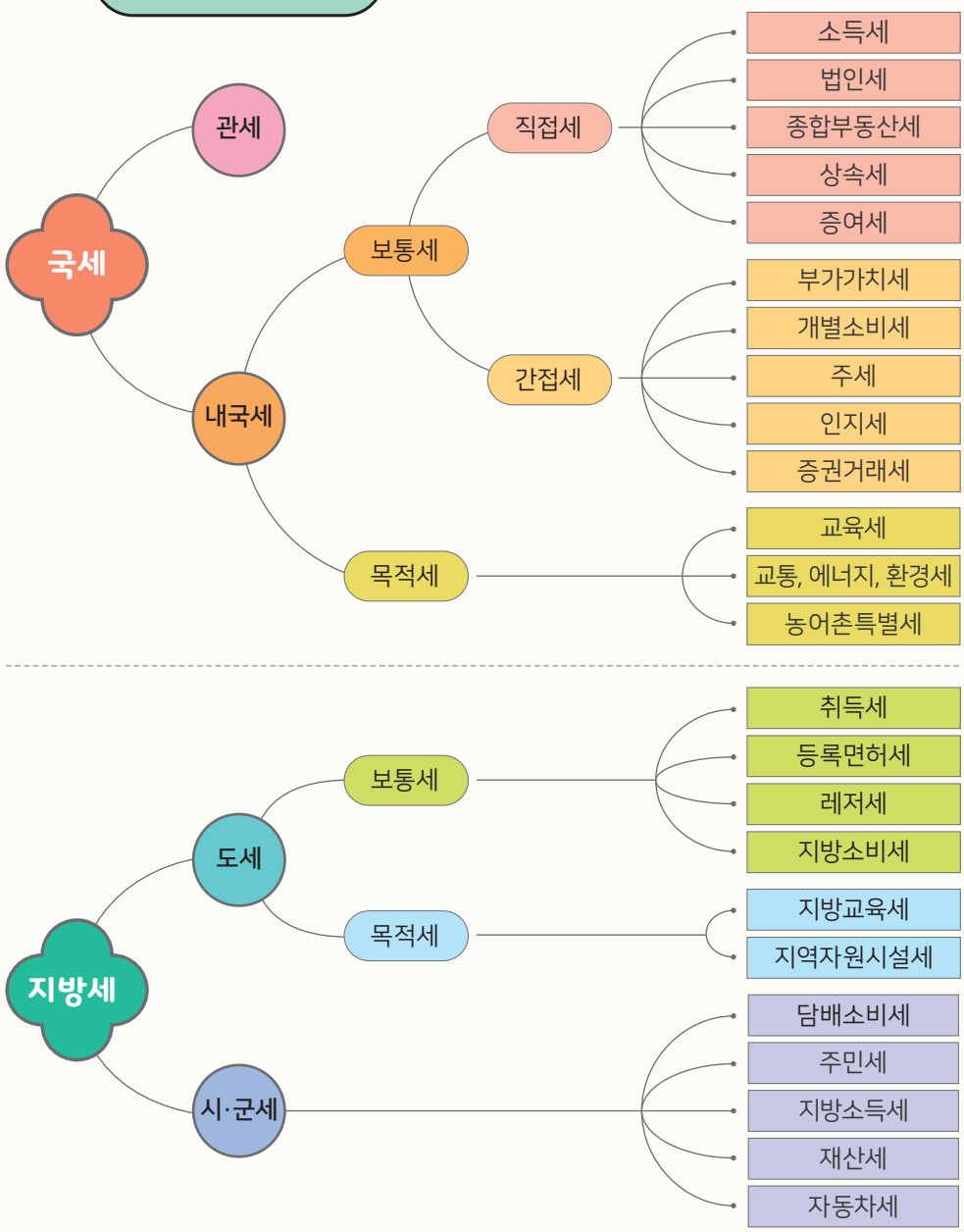

- **보통세와 목적세**
  세금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통세**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면 **목적세**

- **직접세와 간접세**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면 **직접세**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상이하면 **간접세**

Chapter 2

국세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이 장에서 다룰 세금

 # 소득세: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고액자산가에게 부과하는 세금
 # 상속세, # 증여세: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

소득세

01 소득세란?

-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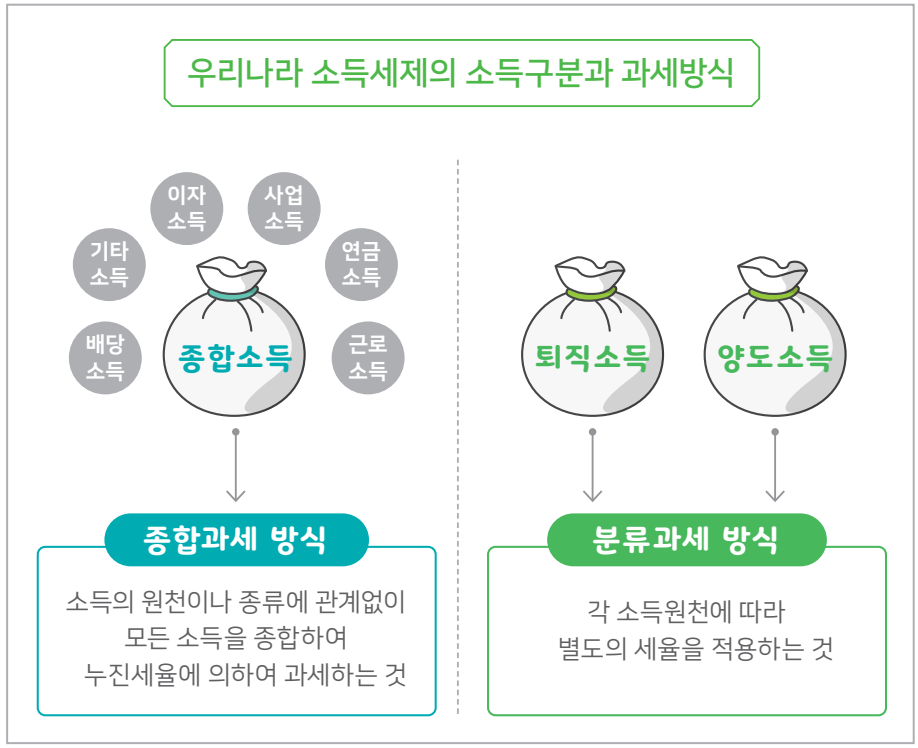

-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부과하나, 가족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02 세율(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세율은 **6~42%**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03 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Q & A

Q 종합소득세 신고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나요?

A 갈음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홈택스(www.hometax.go.kr)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04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여 본인의 소득을 스스로 기록·계산하여야 합니다.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가계부와 같은 장부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구 분
3억원 미만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억5천만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천5백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복식부기 장부로 만든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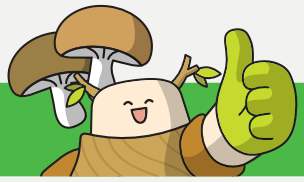

₩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 농협, 산림조합 등 조합에 대한 예탁금(1인당 총합 3천만원 이하에 한함)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2022. 12. 31.까지 발생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 비과세

- 농협, 산림조합 등 조합에 대한 출자금(1인당 1천만원 이하에 한함)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2022. 12. 31.까지 발생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 사업소득 비과세

-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곡물과 옥수수, 콩, 고구마와 같은 기타 식량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소득 중 비과세 대상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대 상	내 용
① 임목생산 소득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 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의 소득
② 작물재배업 소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과세기간동안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
③ 전통주 제조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주류를 제조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
④ 농가부업 소득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 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①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①이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시행령 별표 1]의 가축별로 적용하며(예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양봉 100군 등),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부업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 3,000만원까지 비과세
⑤ 논·밭 임대 소득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Q & A

Q 비과세 되는 임목생산 소득을 계산할 때 '조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조림기간의 계산은 다음에 의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의3 제1항

① 자기가 조림하였을 경우 식림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

② 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일 경우 해당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

③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

④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

⑤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①~④ 적용)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

⑥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양도소득세 감면

- 우리나라는 토지·건물 등 자본적 성격을 지닌 자산을 양도(매도·교환·출자) 할 때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확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 ~ 5. 31.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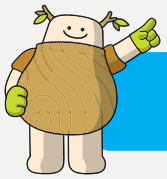

만일 9월 3일에 임야를 양도하였다면,
11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 A

Q 현재 보유 중인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A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첫 화면에서 우측하단에 위치한 세금종류별 서비스의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보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양도가액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설비비·개량비, 지본적지출액, 양도비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6%, 4년 이상 8%, 5년 이상 10%, 6년 이상 12% 7년 이상 14%, 8년 이상 16%, 9년 이상 18%, 10년 이상 20% 11년 이상 22%, 12년 이상 24%, 13년 이상 26%, 14년 이상 28% 15년 이상은 30% ※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12~80% 공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만 해당)
=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미등기 자산은 적용 배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세율	본책 10p 참고
=	
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산지와 관련하여서는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①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②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①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 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는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10~50% 감면합니다.

| 감면대상 |

└ 경영기간 동안 산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산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임업인

| 산지 |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 제외) 또는 시(읍·면 제외)에 있는 산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산지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산지 등은 제외)

| 자경범위 |

└ 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 자경기간 |

└ 산지를 양도하려는 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11p 참조)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 상속인이 상속받은 산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임업에 사용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

| 감면률 |

자경기간	감면율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	50%

| 감면한도 |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이전에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5페이지 용어해설을 참고해주세요.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를 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에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 A

Q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데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요?

A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다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같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로서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임야, 임업후계자가 임산물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등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104조의3]

법인세

01 법인세란?

- 법인세는 **내국법인의 국내외 소득과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법인 구분별 과세범위】

구 분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소득에만 과세	비과세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비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만 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	

출처: 기획재정부 , 「조세개요」, 2019, p.91

02 법인세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기한 내에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서류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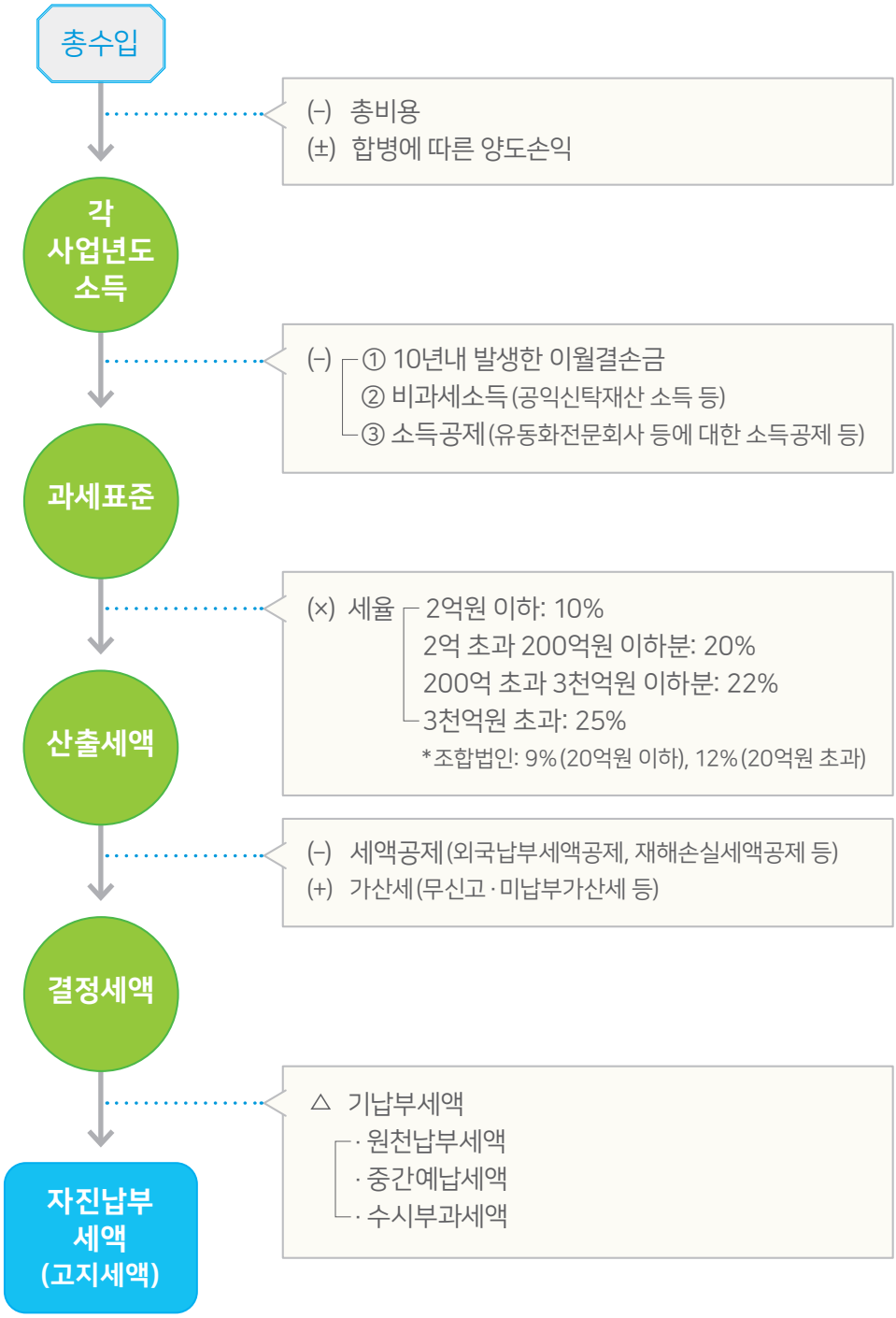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 「조세개요」, 2019, p.9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2021년 과세연도까지 발생분에 한함) 중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구 분	면제 대상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전액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금액 x {6억원 x 조합원 수 x (사업연도 월수 ÷ 12) ÷ 그 외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이하
작물재배업 외 소득	1천 200만원 x 조합원 수 x (사업연도 월수 ÷ 12) 이하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01110)이란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등을 재배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옥수수, 콩, 녹두, 고구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2021년 과세연도까지 발생분에 한함) 중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구 분	면제 대상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전액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금액 x {50억원 x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그 외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이하
작물재배업 외 소득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동안 법인세 50%

종합부동산세

01 종합부동산세란?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세액을 더하여 부과하며, **각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건축물, 분리과세 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재산세 비과세 등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구 분	과세 대상
주 택	인별 보유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한 금액
종합합산토지분	인별 보유 종합합산토지분 공시가격의 합이 5억원 초과한 금액
별도합산토지분	인별 보유 별도합산토지분 공시가격의 합이 80억원 초과한 금액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주택 결정세액	(주택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법정공제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결정세액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법정공제세액
+	
별도합산토지분 결정세액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법정공제세액
=	법정공제세액: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최종 납부세액	

Q & A

Q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가 무엇인가요?

A 과세 대상(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별로 해당연도 총 세액상당액(재산세액 상당액 +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이 전년과 비교하여 150~3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02 세율(2021년)

주 택					종합 합산			별도 합산		
과세 표준	일반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6%	-	1.2%	-	15억원 이하	1%	-	200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45억원 이하	2%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	9,160만원	45억원 초과	3%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3%	11,300만원	6%	18,560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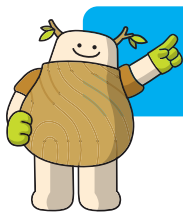

과세표준 =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95%

Q & A

Q 임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나요?

A 임야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분리과세와 비과세인 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분	과세대상	종부세
종합 합산과세	·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임야(도시지역 임야 등)	대상
별도 합산과세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 내 임야 (도시지역 제외) ·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대상
분리 과세	· 보전산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내에 있으면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 도시지역은 제외 하지만, 도시로 편입된 지 2년 미만 임야와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포함 ·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홍수관리구역 내 임야 등 법정제한림 -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 1. 1. 이후 상속 또는 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 ·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 1990. 5. 31.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 6. 1. 이후 상속 또는 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	비대상
비과세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임야	비대상

03 종합부동산세 납부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하면, 납부기간(12. 1. ~ 12. 15.)에 직접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합니다.

상속세

01 상속세란?

- **타인의 사망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상속된 모든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세액계산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기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가 아닌 경우 기초공제 2억원 적용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24p 참고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를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물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02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03 상속공제

구 분	항 목	공제내용	한 도
기초공제		2억원	
인적 공제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받은 가액	최소5억, 30억 한도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000만원	
	장애자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 *통계청장이 고시	
일괄공제		5억원	
가업상속 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200억원 ~ 500억원 한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
금융재산 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이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 ~1억원 -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 금융부채) 전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 × 20%	2억원
재해손실 공제	신고기한이내에 화재·폭발·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가액(담보된 채무 차감)의 100%를 6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 기초공제 + 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와 일괄공제 중 선택

출처: 기획재정부 , 「조세개요」, 2019, p.165

04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50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구 분	공제 조건
중소기업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중소기업 매출액, 독립성)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중견기업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 영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충족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 광업 전체(05~08), 제조업 전체(10~33), 도매 및 소매업 전체(45~47), 음식점업(561), 조경 서비스업(74),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여가관련 서비스업(901, 90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나열된 업종

Q & A

Q 사립휴양림도 가업 상속이 가능한가요?

A 사립휴양림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가관련 서비스업(902)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업 상속이 가능합니다.

- **피상속인의 요건:**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①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②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상속인의 요건:**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갖출 것(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병역·질병 등 사유의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 예외: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

  -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서류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의!

가업상속 이후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및 급여액의 평균이 일정기준(매년 기준수치의 80% 이상, 7년 평균 기준수치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사후의무 위반으로 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 영농상속공제 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영농상속공제 제도란 우수 후계인력의 확보를 통해 농림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1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Q & A

Q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무엇인가요?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 초지, 산지 등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산지의 경우 보전산지 중 산림 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만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인정됩니다.

- **피상속인의 요건**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한 자

Q & A

Q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A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조성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 등 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농림어업·부동산임대업 및 농가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인의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자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영농상속이 가능합니다.

Q & A

Q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가업 및 영농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서류

· 영농상속재산명세서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인 경우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 영농상속인의 농업 등 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

영농상속 이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사후의무 위반으로 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증여세

01 증여세란?

- 생존 시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세액계산

증여재산 가액
- 증여재산 — · 본래의 증여재산 · 증여의제 재산 등
-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 비과세 재산 · 불산입 재산
- (–)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과세가액
- (+) 10년 내 재차증여가산액
- (–) 증여재산공제 등 — · 인적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산출세액 계산
- 증여과세표준
- (×) 세율

결정세액 계산
- 증여세산출세액 (+) 세대생략 증여 할증세액
- (–) 조특법상 면제세액 등 — ·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 세액공제 — · 기납부(증여)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총 결정세액 계산
- 결정세액
- (+) ·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초과가산세 · 공익법인의 무기장 등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연부연납, 물납 자진납부세액 (=) 고지세액

▶▷ 증여재산공제: 친족공제(10년간 공제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재해손실공제 등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

출처: 기획재정부 , 「조세개요」, 2019, p.171

02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03 증여세 신고·납부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신고 · 납부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클릭해주세요.

Q & A

Q 증여세 얼마나 내는지 궁금해요!

A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첫 화면에서 우측하단에 위치한 세금종류별 서비스의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제도는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조기 이전토록하여 미래 농림어업 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감면 한도**

지원 대상: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거주자의 직계비속.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증여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농지 등의 소재지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를 의미합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본 책 27페이지 Q&A를 참고해주세요!

면적 한도

구 분	감면 한도
산림지	·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7ha 이내 (조림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99ha 이내)
농지	· 4ha 이내
초지	·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ha 이내

▶▷ 기타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토지, 염전 등과 관련한 감면 면적한도는 법률을 참고해주세요.

금액 한도: 5개년 통산 1억원

-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영농자녀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 자경농민 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주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Q & A

Q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혜택은 없나요?

A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이 공제되고, 10~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부가가치세

01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구입가격의 10%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mple

만약 어떤 사업자가 가격이 N원인 물건을 사서 N+50원에 소비자에게 팔았다면, 유통업자가 국가에 내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N+50)x10%} - (Nx10%) = 50x10% = 5원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인 50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0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법인사업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 1. ~ 4. 25. 7. 1. ~ 7. 25. 10. 1. ~ 10. 25. 다음해 1. 1. ~ 1. 25.	1. 1. ~ 3. 31.의 사업실적 4. 1. ~ 6. 30.의 사업실적 7. 1. ~ 9. 30.의 사업실적 10. 1. ~ 12. 31.의 사업실적
개인 일반사업자	1기 확정 2기 확정	7. 1. ~ 7. 25. 다음해 1. 1. ~ 1. 25.	1. 1. ~ 6. 30.의 사업실적 7. 1. ~ 12. 31.의 사업실적
개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다음해 1. 1. ~ 1. 25.	1. 1. ~ 12. 31.의 사업실적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2021년~)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임업인에게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혜택

₩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면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인 등록·신고·납부 등은 하지 않아도 되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우리나라는 기초생활, 국민후생, 문화, 생산요소(토지·금융) 등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미가공식료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도 포함됩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임업인이 구매하는 목재펠릿**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영세율이란 세율을 영(零)으로 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이 '0'이 되어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사업자는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0 - 매입세액 = - 매입세액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사업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Q & A

Q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소비자 입장에서 영세율과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세율의 경우 매입 세액을 전액 환급 받고, 면세의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 받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면세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소비자가에 전가됩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항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아래에 열거한 농림업 기자재입니다.

> * 작물재배업·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
6. 스피드스프레이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동력중경제초기
10. 동력수확기
11. 농산물 건조기
12. 동력상토조제기
13. 동력이식기
14. 농업용 난방기
15.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6.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7. 동력탈곡기
18. 동력휴립기
19. 동력시비기
20.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1. 농산물 결속기
22.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3. 농산물 세척기
24. 동력심경기
25. 동력구굴기
26.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27.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28.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29. 육묘상자
30. 파종기
31. 농업용 스프링쿨러
32. 버섯재배소독기
33.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3]

1. 임업용 동력천공기
2. 임업용 약제주입기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 포함)
4. 임업용 동력기계톱 (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
5. 임업용 윈치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9. 타워야더 (Tower yarder)
10. 포워더 (Forwarder)
11. 목재파쇄기
12. 톱밥제조기
13. 동력임내차
14. 밤수집기
15. 자동지타기

농·임·어업용 면세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면세유는 농산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를 경감하고자 농민, 임업인, 어민이 농림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하여 공급하는 석유입니다.

-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협, 산림조합, 수협 등에 각각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보유현황과 농업·임업·어업 경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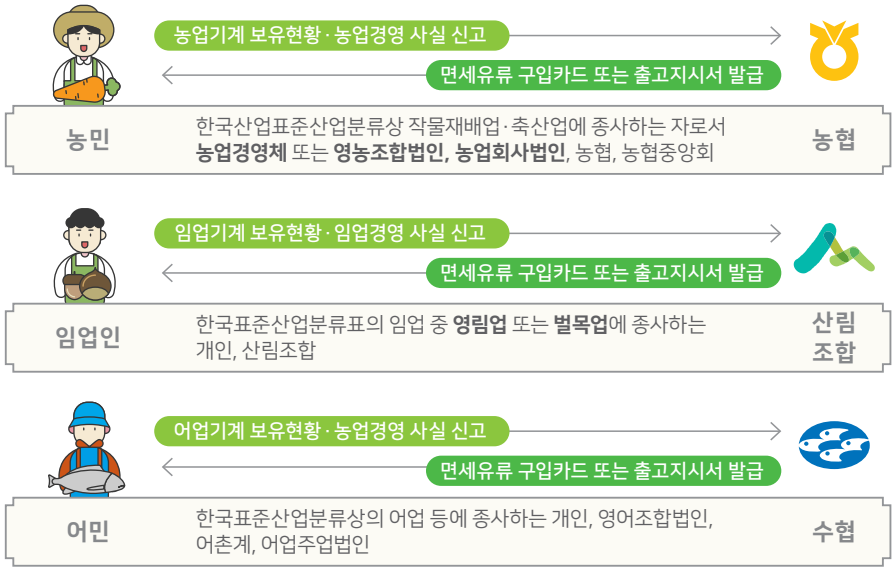

농업용 면세유 신고

▶ **기계 신고기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필요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 임야),
[신규구입] 신규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기계 출하증명서
[중고구입] 매매계약서, 양도서
(필요시 이·통장 확인서 또는 농기계 보유현황의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은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년**, 그 외의 기종에 대해서는 **매 홀수연도**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농업기계의 취득·양도,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경우 30일 내에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함)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동력이식기
16.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
17. 동력절단기
18.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19. 농업용 양수기
20. 동력예취기
21. 동력탈곡기
22. 동력배토기
23. 동력시비기
24.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5. 농산물 결속기

다음장에 계속 >

26.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27. 농산물 세척기
28. 동력혈굴기
29. 동력구절기
30.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1.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2. 동력파종기
33. 농선
34. 잔디깎는 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함)
35. 녹차채엽기
36. 버섯재배소독기
37.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38. 농업용 로더(4톤 미만)
39. 농업용 동력제초기
40.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 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
41.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42.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임업용 면세유 신고

- **기계 신고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 **필요서류**: [기본] 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별지3), 영림업 또는 벌목업 종사 증명서류 (예: 원목생산업 등록증(벌목업에 종사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영농자재구매영수증, 생산물출하증명서, 산림경영계획인가증 등
  [신규구입] 신규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임업기계 출하증명서
  [중고구입] 매매계약서, 양도서
- 임업인은 임업기계에 대하여 2년마다 보유현황을 산림조합에 재신고하여야 합니다.

▶▷ 임업기계의 취득·양도,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경우 30일 내에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3]

1. 임업용 동력기계톱	6. 톱밥제조기
2. 임업용 동력천공기	7. 자동지타기
3. 임업용 윈치	8. 동력상하차기
4. 임업용 동력집재기	9. 동력임내차
5. 목재파쇄기	10. 타워야더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재료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대상 의제매입세액** = **농 · 축 · 수 · 임산물 매입가액 X 공제율**

> **공제율(연간)**

업 종			공제율
음식점	개 인	과세표준 2억 이하	9 / 109*
		과세표준 2억 초과	8 / 108
	법인		6 / 106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		6 / 106
	개인, 중소기업		4 / 104
기 타			2 / 102

> **공제한도 (공제대상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 분	과세표준	기본(2021년까지)	음식점업(2021년까지)
개인사업자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55%	과세표준의 65%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60%
	2억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의 40%	

▶▷ 과세표준: 과세기간 동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 또는 임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 작물재배업·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

- **환급 방법**: 매 분기별로 세금계산서와 농어민등확인서 등을 구비한 후 농협·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신청하여 환급받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1. 농업·임업용 필름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
4.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
6.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에 한정)
8. 농업·임업용 부직포(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
9.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

13. 농업·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정)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 (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 (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 [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
44. 농산물·임산물 수확용 상자 (플라스틱 재질에 한정)
45. 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Chapter 3

지방세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이 장에서 다룰 세금

 #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
 #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하는 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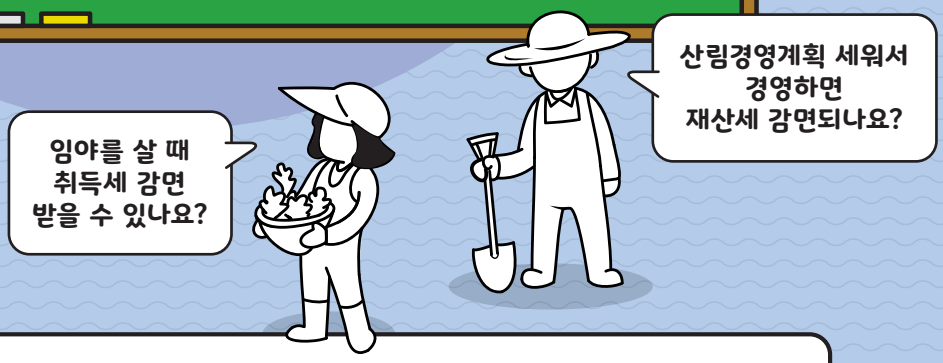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인 지방세**와 관련하여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지방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청 세정과로 문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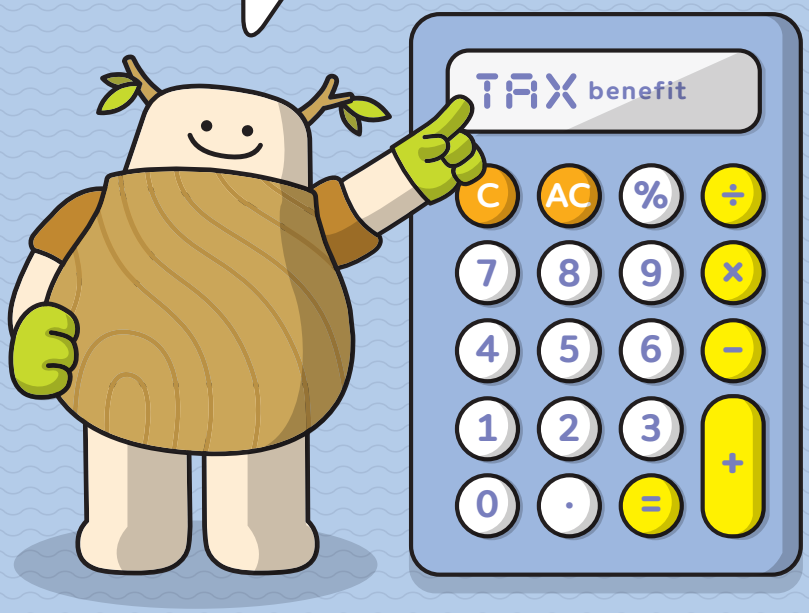

취득세

01 취득세란?

- 토지 등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02 세율

주택 등 건축물 1 ~ 12%	차량 2 ~ 7%
농지 2.3 ~ 3%	농지 외 토지 2.8 ~ 4%

03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며, 취득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 및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징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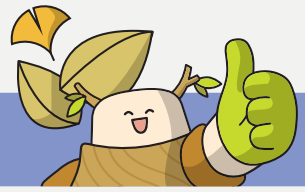

₩ 전문임업인 취득 보전산지, 교환·분합 임야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

-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99만㎡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 면적과 합산하여 99만㎡를 초과하지 않는 분에 한정합니다.)

- 또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면제합니다.

>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라면, 다음의 취득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 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창고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
> 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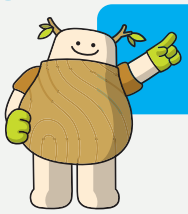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독림가에는 법인독림가도 포함됩니다!

재산세

01 재산세란?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보유한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 토지의 경우 성격에 따라 아래의 표처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table>
<tr><th>구분</th><th>과세방법</th><th>과세대상</th><th>과세율</th></tr>
<tr><td>종합합산과세</td><td>소유자를 기준으로 시·군·구별 합산과세</td><td>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td><td><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5,000만원 이하</td><td>0.2%</td></tr><tr><td>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td></tr><tr><td>1억원 초과</td><td>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td></tr></table></td></tr>
<tr><td>별도합산과세</td><td rowspan="4">토지별 개별 과세</td><td>법에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td><td><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0.2%</td></tr><tr><td>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td>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td></tr><tr><td>10억원 초과</td><td>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td></tr></table></td></tr>
<tr><td rowspan="3">분리과세</td><td>농지, 목장용지, 임야</td><td>0.07%</td></tr>
<tr><td>공장, 염전, 터미널 등 이외의 토지</td><td>0.2%</td></tr>
<tr><td>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td><td>4%</td></tr>
</table>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산출세액 → 세부담상한 적용 → 결정세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건축물 70%, 주택 60%

▶▷ 세부담상한이란 당해연도세액이 직전년도세액의 105~15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임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구 분	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	·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임야(도시지역 임야 등)
별도합산과세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 내 임야(도시지역 제외) ·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분리과세	· 보전산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내에 있으면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 도시지역은 제외 하지만, 도시로 편입된 지 2년 미만 임야와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포함 ·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홍수관리구역 내 임야 등 법정제한림 └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 1. 1. 이후 상속 또는 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 ·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 6. 1. 이후 상속 또는 법인합병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
비과세	·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임야

별지1 꿀정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 정보!

국세 관련 세법 관련 상담, 세금 신고·납부 문의는
국세상담센터에서! (국세·지방세 통합)

- 전화 | 국번없이 126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PC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상담 / 제보
- 모바일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접속 → 모바일 상담

생활 속 각종 세금에 대한 일반 상식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생활세금 시리즈」, 「세금절약 가이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참고하세요!

Step 01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접속
Step 02	국세정보
Step 03	국세청 발간 책자
Step 04	세금개요 책자 클릭

농업도 겸업 중이라면,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와
「농업법인 안내서」도 참고해보세요~

Step 01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www.mafra.go.kr) 접속
Step 02	정책홍보
Step 03	전자도서관 클릭

각종 세법 조항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www.law.go.kr)을
활용해주세요.

별지2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01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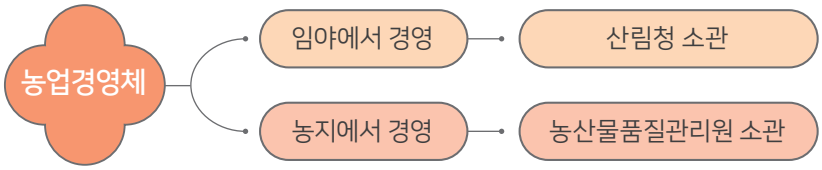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8. 12. 24.)으로 생산수단에 '임야' 추가

02 등록 대상자

-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1천㎡ 이상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300㎡ 이상
③ 밤나무: 5천㎡ 이상
④ 잣나무: 1만㎡ 이상
⑤ 표고자목: 20㎥ 이상
⑥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⑦ ①에서 ⑥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만㎡ 이상

▶▷ 이미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변경신청을 통해 임야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03 등록방법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 시스템 등록 ➤ 현장 조사 ➤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04 신청서 작성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 · 면적 · 경영형태 · 시설현황 재배품목 · 산림경영계획인가 · 생산량 · 교육이수 · 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Step 01 산림청 웹사이트(www.forest.go.kr) 접속

Step 02 상단카테고리 **민원 / 소통** 클릭

Step 03 **민원신청** 클릭

Step 04 **민원서식** 클릭

Step 05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 179번)

05 등록혜택

- 경영체 유형별·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 보조사업, 세제혜택, 농민수당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명이 간소화됩니다.

구 분		지원내용	자격요건	증빙자료	
분야	관련기관				
국고 보조·융자금 지원대상 자격 증명	산림청	보조·융자 지원사업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임업인 증빙서류로 활용가능
				-	별도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건강보험 공단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농·축산·임·어업인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이·통장 확인서
	연금보험 공단	농업인 국민연금 감면	농·축산·임·어업인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이·통장 확인서
	한국장학 재단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업 종사 또는 농어촌지역 거주자 (본인 또는 자녀)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농어업 종사 증빙서류
	농협	농협 장학관 (대학생 기숙사)	농업인 (본인 또는 자녀)	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협조합원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보건복지부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인	경영체	자동 전산확인
				-	농업인 확인서
조세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	농업법인 면허세 감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또는 산림조합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 배당소득세 감면	농업회사법인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업인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농업용 면세유 공급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협		
		임업용 면세유 공급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산림조합		
		농·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작물재배업 개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법인, 농업인, 임업인(영림업, 벌목업)		
농민수당	일부 지자체	농민수당 지급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계속 거주 중인 농업경영체		
인력 등 기타지원	농협	전국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고용부 및 법무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자격	영농규모 일정 기준 충족 농업경영체		

※ 경영체 관련 지원사업(위 지원사업 포함)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문의

06 접수기관 주소 및 연락처

주민등록 소재지	접수기관	주 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중 춘천시·원주시 홍천군·횡성군 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	북부지방 산림청	(우)26461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124	ⓣ 033-738-6171~3 ⓕ 033-738-6179
	서울 국유림관리소	(우)0279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8가길 30	ⓣ 02-3299-4562 ⓕ 02-965-0645
	수원 국유림관리소	(우)1663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03번길 18	ⓣ 031-240-8926 ⓕ 031-240-8941
	춘천 국유림관리소	(우)2420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5	ⓣ 033-240-9944 ⓕ 033-240-9949
강원도 중 강릉시·동해시 태백시·속초시 삼척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 고성군·양양군	동부지방 산림청	(우)25473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033-640-8651~3 ⓕ 033-640-8650
	평창 국유림관리소	(우)25359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 2길 11-3	ⓣ 033-330-4047 ⓕ 033-333-2317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 창원시·김해시 밀양시·양산시 함안군·창녕군	남부지방 산림청	(우)36663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솔밭길 28	ⓣ 054-842-7102~4 054-850-7746 ⓕ 054-842-7106
	영주 국유림관리소	(우)36139 경상북도 영주시 반지미로 178	ⓣ 054-630-4038 ⓕ 054-632-4254
	영덕 국유림관리소	(우)36409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 054-730-8138 ⓕ 054-732-8230
	구미 국유림관리소	(우)39360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대로 307-2	ⓣ 054-712-4125 ⓕ 054-712-4154
	울진 국유림관리소	(우)36326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 054-780-3945 ⓕ 054-783-5144
	양산 국유림관리소	(우)50639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 055-370-2735 ⓕ 055-362-3799

06 접수기관 주소 및 연락처

주민등록 소재지	접수기관	주 소	연락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중부지방 산림청	(우)32599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 041-850-4056~8 041-850-4060 ⓕ 041-850-4069
	충주 국유림관리소	(우)27478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006	ⓣ 043-850-0336 ⓕ 043-850-0369
	보은 국유림관리소	(우)2894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 043-540-7077 ⓕ 043-540-7090
	단양 국유림관리소	(우)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5	ⓣ 043-420-0343 ⓕ 043-423-1256
	부여 국유림관리소	(우)33123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19-16	ⓣ 041-830-5045 ⓕ 041-835-1980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중 진주시·통영시 사천시·거제시 의령군·고성군 남해군·하동군 산청군·함양군 거창군·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지방 산림청	(우)55710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 063-620-4654~5 063-620-4657 063-620-4659 063-620-4666~7 ⓕ 063-620-4649
	정읍 국유림관리소	(우)56190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 벚꽃로 564-20	ⓣ 063-570-1960~1 ⓕ 063-570-1939
	무주 국유림관리소	(우)55522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52	ⓣ 063-320-3649 063-320-3651 ⓕ 063-320-3660
	영암 국유림관리소	(우)58431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입비동길 1	ⓣ 061-472-2217~9 ⓕ 061-472-2210
	순천 국유림관리소	(우)58026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길 180	ⓣ 061-740-9370~1 ⓕ 061-740-9379
	함양 국유림관리소	(우)50044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	ⓣ 055-960-2538~9 ⓕ 055-960-2570

발 행 처 산림청
초 판 발 행 2020년 11월
기 획 · 제 작 사유림경영소득과
검 토 위 원 산림조합중앙회 김진명 과장
세무법인 뉴조이 서창원, 유의종 세무사
디자인 · 인쇄 웃고문화사

* 본 책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forest.go.kr

산림청